

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

-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‘○’ 표시를 합니다.

운영기관	군산시	심의일자	2026. 8. 27.
건축종별	[] 신축, [○] 증축, [] 대수선, [] 기타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대한불교조계종 보천사		
대지현황	대지위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서수면 축동리		
	지번 634-1	관련지번 634, 633, 635, 산151-1	
	대지면적 2,530㎡	용도지역(지구, 구역) 생산관리지역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 388.99㎡(증243.2㎡)	건폐율 16.55%	층수 지하 : - 층/ 지상 : 2층
	주용도 제2종근생(사찰)	구조 목구조 외	건축물 동수 주3동/부속4동
	최고높이 7.9m	용적률 20.83%	연면적 합계 489.55㎡(증343.76㎡)
구 분	주요 심의 내용		
(전통사찰 양성화 심의) 분야	- 양성화 건물이 「건축법」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 확인 검토 - 부속3동(창고)에 대한 전통사찰로서의 외관 중시, 수정 및 보완 요함 - 현행법 단열 기준 준수여부 확인 불능 → 허가부서에서 확인 후 사용승인 요 -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에 부합되도록 진행 요망 - 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세부 규정 제3조2항 참조 - 주2동(요사채) 증축 부분 2층 건물로 구조안전확인 대상 확인 필요 - 사용승인 특례 완화 적용 외 현행 건축법에 적합한 설계도서 및 현장확인 가능 여부 검토 - 주2동(요사채) 인접건축물과 이격거리 확인 필요		
심의결과	[] 원안 의결 [○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		
근거조문			
건축위원회 심의기준	9.3 심의결과는 다음 각 목 중 하나로 정하며, 조건부 및 재검토 의결은 이행 가능한 명확한 대안이나 재검토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위원장이 과반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하도록 한다. 가. 원안의결 : 상정 안건에 대하여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 나. 조건부 의결 : 상정 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다. 재검토 의결 : 상정 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라. 부결 : 상정 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. 단,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한다. 9.6 위원회 심의 주요결과는 [별지 제2호]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, 동 서식에 따라 건축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 건축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		
작성방법			
1. 심의 결과는 “원안의결”, “조건부 의결”, “재검토 의결” 또는 “부결”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기 2. “주요 심의 의견” 란은 개인 식별(이름, 소속 등)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기재(필요 시 심의위원은 표기를 甲, 乙, 丙으로 하는 등 임의로 기재 가능)			